

 통일부		<h1>보도자료</h1>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2쪽(붙임 1쪽 포함)	
배포일시	2020. 11. 4. (수)	담당부서	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		
담당과장	조용식 (02-901-7050)	담당자	김영호 사무관 (02-901-7051)		

**사회단체를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추진**  
 - 통일교육원, 한국자유총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-

- 통일부 통일교육원(원장 백준기)은 2020년 11월 4일 한국자유총연맹(총재 박종환)과 자유총연맹 회원 대상 통일교육 실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국민적 통일공감 확산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  - 이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은 350여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평화·통일 교육과정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  -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원 교수를 비롯한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,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맹 회원들과 지역사회에 통일공감대 확산과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통일교육원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, 전국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태권도원, 종교계, 노동계 등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.

※ 붙임 : 업무협약서 1부. 끝.



# 통일교육원-한국자유총연맹 상호협력 협약서

“통일부 통일교육원”과 “한국자유총연맹”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및 국민복지 가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각각의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평화·통일교육 관련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아래 협력 사업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협력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한국자유총연맹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강사진 양성, 강좌 개설 등 평화·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협력한다
2. 통일교육원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요청할 경우 강사진,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운영에 협력한다.
3. 양 기관은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.
4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업무에 대해 협력한다.

제3조(비밀유지 의무)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4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. 단, 양 기관 간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) 동 사업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자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효력 발생일) 동 협약의 효력은 통일교육원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2조(협약서의 보관) 동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1월 4일

통일부 통일교육원

원장 백준기

한국자유총연맹

총재 박종환